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일반용 예시)

1. 목적 : 학원 수강, 상담, 학습정보 제공, 공지사항 및 소식지 전달			
2. 수집 항목			
필수정보	다음 항목은 학원 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학원 수강을 위한 목적 으로만 사용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휴대전화)		주소
	학부모연락처		학부모성함
선택정보	학교		전자우편
	학년		성 별
	수상실적을 학원홍보에 동의		학부모직업
	다음 항목은 학생의 상담, 학습정보의 제공, 공지사항 전달, 소식지 전달 등의 목적 으로 사용하며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 목적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학원 퇴원 후 6개월(1년)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는 파기합니다. (즉시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선택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할 경우 학원 수강 중이라도 해당 정보는 삭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학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본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학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 /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원에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이름 : (인)
○ ○ 학원 귀하

<보안 서약서(예시)>

업무 중에 알게된 개인정보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나 업무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시 : 2022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강사의 인적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해 다시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남부 장소 앞)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제10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주 :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